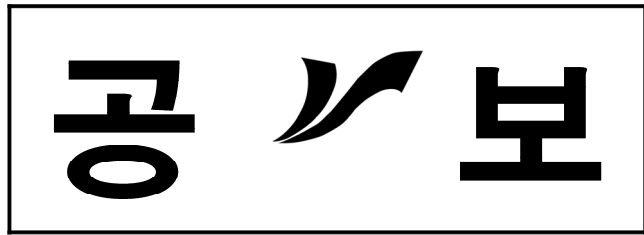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64호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정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61호 불법(노점상·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 2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7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계		7 7 5	
	정 무 직	계	1	
	일 반 직	계	6 8 0	
		3 급	1	행정 1
		4 급	5	행정 2, 시설 1, 보건·의무 1, 행정·농업 1
		5 급	4 2	행정26, 지적 1, 의무 4, 토목·건축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농업·기계·토목 1, 행정·보건·환경·통신기술 1, 행정·토목·건축 1, 행정·임업·토목·건축1, 행정·농업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전기·농업·전산 1, 행정·화공·농업·임업 1
		6 급	1 4 0	행정 70, 농업 1, 임업 3, 토목 5, 건축 3, 지적 3, 보건 2, 환경 4, 약무 1, 세무 3, 통신기술 1, 전산 1, 전기 1, 간호 1, 사회복지 4, 행정·세무 5, 행정·보건 3, 보건·약무, 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행정·환경 2, 행정·지적 1, 행정·기계 2, 행정·농업 1, 행정·농업·임업 1, 간호·의료기술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건축 2, 행정·토목·건축 3, 화공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사회복지 4, 임업·토목·건축 1, 행정·토목 1, 행정·기계·지적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7 급	1 9 3	행정89, 농업 1, 임업 3, 토목14, 건축 11, 지적 4, 보건 8, 환경 6, 기계 5, 화공 1, 전기 2, 간호 4, 세무 14, 전산 3, 수의 1, 통신기술 2, 토목·건축 3, 의료기술 3, 행정·농업 1, 사회복지 11, 수의·축산 1, 행정·농업·축산 1, 화공·환경·보건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행정·농업·임업 2
		8 급	2 0 5	행정87, 농업 1, 임업 2, 토목 12, 건축 9, 지적 4, 보건 11, 환경 10, 기계 2, 화공 2, 전기 1, 간호 10, 전산 6, 세무20, 통신기술 2, 보건·화공 1, 의료기술 2, 행정·농업 2, 사회복지 17, 수산 1, 환경·기계 1, 의료기술·식품위생2
		9 급	9 4	행정37, 토목 2, 건축 3, 보건 10, 환경 3, 기계 1, 세무 8, 의료기술 2, 사회복지 16, 토목·건축 2,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4, 행정·환경1, 임업 2, 지적 2, 전기 1
	별정직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7 급	1	일반비서 1
	기 능 직	계	9 2	
		6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7 급	5	전기 1, 기계 2, 운전 1, 조무(조무) 1
		8 급	1 1	기계 2, 통신 1, 운전 2, 조무(조무) 2, 전산 1, 교환 1, 전기 1, 조무(주차단속) 1
		9 급	2 7	운전12, 사무(필기) 2, 조무(조무) 9, 전산 1, 교환 1, 전기 1, 사무(워드) 1
		10 급	4 7	운전20, 전산 1, 조무(조무) 14, 조무(주차단속) 4, 조무(지도) 8
구 본 청	계		4 8 8	
	정 무 직	소 계	1	
	일 반 직	소 계	4 2 8	
		3 급	1	행정 1
		4 급	3	행정 1, 시설 1, 행정·농업 1
		5 급	1 7	행정 10, 지적 1, 행정·농업 1, 토목·건축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토목·건축 1, 행정·임업·토목·건축 1,
		6 급	9 2	행정42, 농업 1, 임업 3, 토목 4, 건축 2, 지적 3, 보건 2, 환경 4, 세무 3, 사회복지 4, 통신기술 1, 전산 1, 전기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지적 1, 행정·기계 2, 행정·건축 2, 화공 1, 행정·토목·건축 3, 행정·세무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토목 1, 임업·토목·건축 1, 행정·보건·환경 1
		7 급	1 2 6	행정51, 농업 1, 임업 3, 토목13, 건축 9, 지적 4, 보건 4, 환경 6, 기계 4, 수의 1, 수의·축산 1, 화공 1, 전기 2, 세무 12, 전산 3, 통신기술 2, 사회복지 6, 토목·건축 3
		8 급	1 4 1	행정60, 농업 1, 임업 2, 토목 10, 건축 8, 지적 4, 보건 8, 기계 2, 화공 2, 전기 1, 환경 10, 전산 6, 세무16, 통신기술 2, 사회복지 6, 행정·농업 1, 보건·화공 1, 수산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9 급	4 8	행정17, 토목 2, 건축 3, 보건 4, 환경 3, 기계 1, 세무 6, 토목건축 2, 행정·환경1, 임업 2, 지적 2, 사회복지 4, 전기 1
	별 정 직	소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7 급	1	일반비서 1
	기 능 직	소 계	5 7	
		6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7 급	5	전기 1, 기계 2, 운전 1, 조무(조무) 1
		8 급	1 1	기계 2, 통신 1, 운전 2, 조무(조무) 2, 교환1, 전기 1, 전산 1, 조무(주차단속) 1
		9 급	1 9	운전 6, 조무(조무) 9, 전산 1, 교환 1, 사무(워드) 1, 전기 1
		10 급	2 0	운전 2, 전산 1, 조무(조무) 5, 조무(주차단속) 4, 조무(지도) 8
의회사무국	계		1 7	
	일 반 직	소 계	1 1	
		4 급	1	행정 1
		5 급	2	행정 2
		6 급	3	행정 3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2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6	
		9 급	3	운전 1, 사무(필기) 2
		10 급	3	조무(조무) 2,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보 건 소	계		6 0	
	일 반 직	소 계	5 6	
		4 급	1	보건·의무 1
		5 급	5	의무 4, 행정·보건·간호 1
		6 급	9	간호 1, 약무 1, 행정·보건·간호 1, 간호·의료기술 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7 급	1 3	보건 4, 간호 4, 의료기술 3, 보건·간호·의료기술 2
		8 급	1 6	보건2, 간호10, 의료기술2, 의료기술식품위생 2
		9 급	1 2	보건 5, 의료기술 2, 사회복지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4
	기 능 직	소 계	4	
		9 급	1	운전 1
		10 급	3	운전 2, 조무(조무) 1
출 장 소	계		3 7	
	일 반 직	소 계	3 3	
		5 급	1	행정·농업·기계·토목 1
		6 급	8	행정 1, 건축 1, 행정·세무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세무 1, 토목 1, 행정·농업·임업 1, 행정·기계·지적 1
		7 급	1 2	행정 2, 토목 1, 건축 2, 기계 1, 화공·환경·보건 1, 행정·농업·축산 1, 세무 2, 행정·농업·임업 2
		8 급	9	토목 2, 세무 4, 건축 1, 보건 1, 환경·기계1
		9 급	3	세무 2, 보건 1
	기 능 직	소 계	4	
		10 급	4	운전 2, 조무(조무) 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동	계		1 7 3	
	일 반 직	소 계	1 5 2	
		5 급	1 7	행정 14, 행정·전기·농업·전산 1, 행정·보건·환경·통신기술 1, 행정·화공·농업·임업 1
		6 급	2 8	행정 24, 행정·농업 1, 행정·사회복지 3
		7 급	4 0	행정 34, 사회복지 5, 행정·농업 1
		8 급	3 7	행정 25, 사회복지 11, 행정·농업 1
		9 급	3 0	행정 19, 사회복지 11
	기 능 직	소 계	2 1	
		9 급	4	운전 4
		10 급	1 7	조무(조무) 4, 운전 13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분	직종	직 급	정원	직 렬 별 내 역
합계	계		488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428	
		3 급	1	행정 1
		4 급	3	행정 1, 시설 1, 행정·농업 1
		5 급	17	행정 10, 지적 1, 행정·농업 1, 토목·건축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토목·건축 1, 행정·임업·토목·건축 1
		6 급	92	행정 42, 농업 1, 임업 3, 토목 4, 건축 2, 지적 3, 보건 2, 환경 4, 세무 3, 사회복지 4, 통신기술 1, 전산 1, 전기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지적 1, 행정·기계 2, 행정·건축 2, 화공 1, 행정·토목·건축 3, 행정·세무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토목 1, 임업·토목·건축 1, 행정·보건·환경 1
		7 급	126	행정 51, 농업 1, 임업 3, 토목 13, 건축 9, 지적 4, 보건 4, 환경 6, 기계 4, 수의 1, 수의·축산 1, 화공 1, 전기 2, 세무 12, 전산 3, 통신기술 2, 사회복지 6, 토목·건축 3
		8 급	141	행정 60, 농업 1, 임업 2, 토목 10, 건축 8, 지적 4, 보건 8, 기계 2, 화공 2, 전기 1, 환경 10, 전산 6, 세무 16, 통신기술 2, 사회복지 6, 행정·농업 1, 보건·화공 1, 수산 1
		9 급	48	행정 17, 토목 2, 건축 3, 보건 4, 환경 3, 기계 1, 세무 6, 토목·건축 2, 행정·환경 1, 임업 2, 지적 2, 사회복지 4, 전기 1
	별정직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7 급	1	일반비서 1
	기능직	계	57	
		6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7 급	5	전기 1, 기계 2, 운전 1, 조무(조무) 1
		8 급	11	기계 2, 통신 1, 운전 2, 조무(조무) 2, 교환 1, 전기 1, 전산 1, 조무(주차단속) 1
		9 급	19	운전 6, 조무(조무) 9, 전산 1, 교환 1, 사무(워드) 1, 전기 1
		10급	20	운전 2, 전산 1, 조무(조무) 5, 조무(주차단속) 4, 조무(지도) 8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직 렬 별 내 역
기획감사실	계		66	
	일반직	소 계	63	
		5 급	1	행정 1
		6 급	12	행정7,통신기술1,전산1,임업1,환경1,행정·세무1
		7 급	22	행정11, 건축 2, 전산 3, 통신기술 2, 세무 1, 보건 1, 토목 1, 환경 1
		8 급	22	행정12,전산4,통신기술2,세무1,보건1,건축1,환경1
		9 급	6	전기 1, 건축 1, 보건 1, 임업 1, 환경 2
	기능직	소 계	3	
		8 급	1	교환 1
		9 급	2	조무(조무) 1, 교환 1
총 무 과	계		37	
	정무직		1	
	일반직	소 계	30	
		3 급	1	행정 1
		4 급	1	행정 1
		5 급	1	행정 1
		6 급	7	행정 7
		7 급	6	행정 6
		8 급	11	행정 11
		9 급	3	행정 3
	별정직	소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7 급	1	일반비서 1
	기능직	소 계	4	
		7 급	1	조무(조무) 1
		8 급	1	운전 1
		9 급	2	조무(조무)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재 무 과	계		3 2	
	일 반 직	소 계	2 2	
		5 급	1	행정 1
		6 급	6	행정 4, 전기 1, 행정·건축 1
		7 급	7	행정 4, 전기 2, 건축 1
		8 급	7	행정 2, 전기 1, 건축 1, 세무 1, 토목 1, 전산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0	
		6 급	1	운전 1
		7 급	3	기계 1, 전기 1, 운전 1
		8 급	2	운전 1, 전기 1
		9 급	3	운전 1, 전산 1, 전기 1
		10 급	1	운전 1
세 무 과	계		4 0	
	일 반 직	소 계	4 0	
		5 급	1	행정 1
		6 급	6	세무 3, 행정·세무 3
		7 급	1 1	세무 11
		8 급	1 5	세무 14, 전산 1
		9 급	7	세무 6, 행정 1
민원봉사과	계		1 4	
	일 반 직	소 계	1 2	
		5 급	1	행정 1
		6 급	3	행정 3
		7 급	2	행정 2
		8 급	5	행정 5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2	
		9 급	1	조무(조무) 1
		10 급	1	조무(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지역경제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행정·농업 1
		6 급	4	행정 1, 농업 1, 화공 1, 행정·기계 1
		7 급	8	행정 1, 기계 3, 농업 1, 화공 1, 수의 1, 수의·축산 1
		8 급	7	행정 2, 농업 1, 기계 1, 화공 1, 행정·농업 1, 수산 1
		9 급	1	기계 1
	기능직	소 계	2	
		8 급	1	기계 1
		10 급	1	조무(지도) 1
주민생활 지원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4 급	1	행정·농업 1
		5 급	1	행정 1
		6 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7 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8 급	6	행정 1, 사회복지 5
		9 급	2	사회복지 2
주민복지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 1
		6 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1
		7 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8 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 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조무(지도) 1
문화공보과	계		2 1	
	일 반 직	소 계	1 9	
		5 급	1	행정 1
		6 급	5	행정 5
		7 급	5	행정 5
		8 급	7	행정 7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2	
		6 급	1	조무(조무) 1
		9 급	1	조무(조무) 1
환경위생과	계		3 2	
	일 반 직	소 계	3 1	
		5 급	1	행정·보건·환경 1
		6 급	6	환경 2, 행정·환경 1, 보건 2, 행정·보건 1
		7 급	9	환경 5, 보건 3, 행정 1
		8 급	1 2	화공 1, 환경 7, 보건·화공 1, 보건 3
		9 급	3	환경 1, 보건 1, 행정·환경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전산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청소행정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행정 1
		6 급	5	행정 1, 환경1, 행정·환경 1, 행정·보건 1, 행정·보건·환경 1
		7 급	3	행정 3
		8 급	9	행정 3, 보건 4, 환경 2
		9 급	3	행정 1, 보건 2
	기능직	소 계	3	
		9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10 급	1	운전 1
건설과	계		27	
	일반직	소 계	22	
		4 급	1	시설 1
		5 급	1	토목·건축 1
		6 급	4	행정 1, 토목 2, 행정·토목 1
		7 급	10	행정 3, 토목 5, 토목·건축 2
		8 급	4	행정 2, 토목 2,
		9 급	2	행정 1, 토목·건축 1
	기능직	소 계	5	
		7 급	1	기계 1
		8 급	2	기계 1, 조무(조무) 1
		9 급	2	조무(조무) 1, 운전 1
재난안전 관리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토목·건축 1
		6 급	4	행정 2, 행정·토목·건축 2
		7 급	1	행정 1
		8 급	4	행정 2, 토목 1, 건축 1
		9 급	3	행정 1, 토목 1, 건축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건축허가과	계		2 5	
	일 반 직	소 계	1 8	
		5 급	1	토목·건축 1
		6 급	5	행정 2, 건축 2, 행정·건축 1
		7 급	5	건축 4, 토목·건축 1,
		8 급	5	행정 1, 건축 4
		9 급	2	건축 1, 토목·건축 1
	기 능 직	소 계	7	
		8 급	1	조무(조무) 1
		9 급	4	조무(조무) 2, 운전 1, 사무(워드) 1
		10 급	2	조무(조무) 1, 조무(지도) 1
도시개발과	계		3 8	
	일 반 직	소 계	3 3	
		5 급	1	행정·임업·토목·건축 1
		6 급	7	행정 1, 토목 2, 임업 2, 행정·토목·건축 1, 임업·토목·건축 1
		7 급	1 4	행정 2, 건축 2, 토목 7, 임업 3
		8 급	9	행정 2, 토목 5, 임업 2
		9 급	2	행정 1, 임업 1
	기 능 직	소 계	5	
		8 급	1	통신 1
		10 급	4	조무(조무) 1, 조무(지도) 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지 적 과	계		2 5	
	일 반 직	소 계	2 3	
		5 급	1	지적 1
		6 급	4	지적 3, 행정·지적 1
		7 급	7	행정 3, 지적 4
		8 급	7	행정 2, 지적 4, 건축 1
		9 급	4	행정 1, 토목 1, 지적 2
	기 능 직	소 계	2	
		9 급	1	조무(조무) 1
		10 급	1	조무(조무) 1
교통행정과	계		3 3	
	일 반 직	소 계	2 3	
		5 급	1	행정 1
		6 급	5	행정 4, 행정·기계 1
		7 급	6	행정 5, 기계 1
		8 급	7	행정 5, 기계 1, 토목 1
		9 급	4	행정 4
	기 능 직	소 계	10	
		8 급	2	전산 1, 조무(주차단속) 1
		9 급	1	운전 1
		10 급	7	조무(조무) 1, 조무(주차단속) 4, 조무(지도) 2

【별표 3】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17	
	일 반 직	계	11	
		4 급	1	행정 1
		5 급	2	행정 2
		6 급	3	행정 3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2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계	6	
		9 급	3	운전 1, 사무(필기) 2
		10 급	3	조무(조무) 2, 운전 1
의회사무국	계		17	
	일 반 직	소 계	11	
		4 급	1	행정 1
		5 급	2	행정 2
		6 급	3	행정 3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2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계	6	
		9 급	3	운전 1, 사무(필기) 2
		10 급	3	조무(조무) 2, 운전 1

【별표 4】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6 0	
	일 반 직	계	5 6	
		4 급	1	보건·의무 1
		5 급	5	의무 4, 행정·보건·간호 1
		6 급	9	간호 1, 약무 1, 행정·보건·간호 1, 간호·의료기술 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7 급	1 3	보건 4, 간호 4, 의료기술 3, 보건·간호·의료기술 2
		8 급	1 6	보건2, 간호10, 의료기술2, 의료기술식품위생2
		9 급	1 2	보건 5, 의료기술 2, 사회복지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4
	기 능 직	계	4	
		9 급	1	운전 1
		10 급	3	운전 2, 조무(조무) 1
보건행정과	계		4 2	
	일 반 직	소 계	3 8	
		4 급	1	보건·의무 1
		5 급	4	의무 3, 행정·보건·간호 1
		6 급	6	간호 1, 약무 1, 행정·보건·간호 1,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7 급	8	보건 3, 간호 3, 의료기술 2,
		8 급	1 0	보건 2, 간호 6, 의료기술 2
		9 급	9	보건 4, 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4
	기 능 직	소 계	4	
		9 급	1	운전 1
		10 급	3	운전 2, 조무(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검단 보건지소	계		18	
	일 반 직	계	18	
		5 급	1	의무 1
		6 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간호·의료기술 1
		7 급	5	보건 1, 간호 1, 의료기술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8 급	6	간호 4, 의료기술·식품위생 2
		9 급	3	보건 1, 사회복지 1, 의료기술 1

【별표 5】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계		37	
	일 반 직	계	33	
		5 급	1	행정·농업·기계·토목 1
		6 급	8	행정 1, 건축 1, 행정·세무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세무 1, 토목 1, 행정·농업·임업 1, 행정·기계·지적 1
		7 급	12	행정 2, 세무 2, 토목 1, 건축 2, 기계 1, 행정·농업·임업 2, 화공·환경·보건 1, 행정·농업·축산 1
		8 급	9	토목 2, 세무 4, 건축 1, 보건 1, 환경·기계1
		9 급	3	세무 2, 보건 1
	기 능 직	계	4	
		10 급	4	운전 2, 조무(조무) 2
검단출장소	계		37	
	일 반 직	소 계	33	
		5 급	1	행정·농업·기계·토목 1
		6 급	8	행정 1, 건축 1, 행정·세무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세무 1, 토목 1, 행정·농업·임업 1, 행정·기계·지적 1
		7 급	12	행정 2, 세무 2, 토목 1, 건축 2, 기계 1, 행정·농업·임업 2, 화공·환경·보건 1, 행정·농업·축산 1
		8 급	9	토목 2, 세무 4, 건축 1, 보건 1, 환경·기계1
		9 급	3	세무 2, 보건 1
	기 능 직	소 계	4	
		10 급	4	운전 2, 조무(조무) 2

【별표 6】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계		1 7 3	
	일 반 직	계	1 5 2	
		5 급	1 7	행정 14, 행정·전기·농업·전산 1, 행정·보건·환경·통신기술 1 행정·화공·농업·임업 1
		6 급	2 8	행정 24, 행정·농업 1, 행정·사회복지 3
		7 급	4 0	행정 34, 사회복지 5, 행정·농업 1
		8 급	3 7	행정 25, 사회복지 11, 행정·농업 1
		9 급	3 0	행정 19, 사회복지 11
	기 능 직	계	2 1	
		9 급	4	운전 4
		10 급	1 7	조무(조무) 4, 운전 13
검암경서동	계		9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전기·농업·전산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계	1	
		10 급	1	운전원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연 히 동	계		1 4	
	일 반 직	소 계	1 2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 급	3	행정 3
		9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2	
		10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가 정 1 동	계		1 1	
	일 반 직	소 계	1 0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 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 급	2	행정 2
		9 급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가 정 2 동	계		1 0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1	행정 1
		8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2	
		9 급	1	운전 1
		10 급	1	조무(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가 정 3 동	계		8	
	일 반 직	소 계	7	
		5 급	1	행정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9 급	1	운전 1
신현원창동	계		10	
	일 반 직	소 계	9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1	행정 1
		8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석 남 1 동	계		11	
	일 반 직	소 계	10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 급	2	행정 2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석 남 2 동	계		9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석 남 3 동	계		10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2	행정 2
		8 급	1	사회복지 1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2	
		10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가 좌 1 동	계		10	
	일 반 직	소 계	9	
		5 급	1	행정·보건·환경·통신기술 1
		6 급	2	행정 2
		7 급	2	행정 2
		8 급	1	사회복지 1
		9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가 좌 2 동	계		9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가 좌 3 동	계		10	
	일 반 직	소 계	9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 급	1	행정 1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가 좌 4 동	계		9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결 별 내 역
검 단 1 동	계		13	
	일 반 직	소 계	11	
		5 급	1	행정·화공·농업·임업 1
		6 급	2	행정 1, 행정·농업 1
		7 급	4	행정 2, 행정·농업 1, 사회복지 1
		8 급	2	행정 2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2	
		10 급	2	운전 1, 조무(조무) 1
검 단 2 동	계		10	
	일 반 직	소 계	9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2	행정 2
		8 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9 급	1	운전 1
검 단 3 동	계		9	
	일 반 직	소 계	8	
		5 급	1	행정 1
		6 급	1	행정 1
		7 급	2	행정 2
		8 급	2	행정 2
		9 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기 능 직	소 계	1	
		10 급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검 단 4 동	계		1 1	
	일 반 직	소 계	1 0	
		5 급	1	행정 1
		6 급	2	행정 2
		7 급	3	행정 3
		8 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1	
		9 급	1	운전 1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61호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

1. 주민의 통행이나 도로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시키며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수거한 노상적치물(노점포장마차 포함)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의7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9조의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동법시행규칙제29조의 2(적치물등의 관리등)규정에 의거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고하오니 동 노상적치물(포장마차포함)을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공고기간 내에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환의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 6제2항 규정에 의거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하게 되며 공고 기간이 지난 후 반환 요구가 없는 수거 적치물(포장마차 포함)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제29조의 5의④항및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 7(비반환적치물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이 나 6개월 경과 후 우리구에 귀속되어 폐기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가. 공고기간 : 2007. 2. 9 - 2007. 2.23 (15일간)

나. 보관물 : 포장마차 및 기타 적치물(별지목록)

다. 보관장소 : 원창동 북항 토사적환장

라. 반환조건 :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부과 후 반환

마. 반환 요구자 : 반환물 소유자 및 관리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 구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집 및 위촉

- 공개모집을 원칙
-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 위촉

○ 자격요건

-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해 촉

-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활동실적이 없거나 허위내용을 제보한 경우
-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운 영

-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원칙, 우편, 전화 등을 병행가능
- 모니터가 조사·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 그 결과를 회신
-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운영가능
- 전체모니터를 대표하는 회장을 둘 수 있음.

○ 활 동

- 구에서 요청하는 정책추진사항이나 정책현장의 확인조사, 설문조사
-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 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
-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활동지원

-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교육 또는 간담회를 소집가능
- 모니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경주

○ 실비보상

- 활동참여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지급가능

○ 사기진작

-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 28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 400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고충상담팀
【☎ 032)560-4587】 에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 구정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4조 (자격요건) 모니터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2.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활동실적이 없거나 허위내용을 제보한 경우
3.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 (운영) ①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모니터가 조사·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고 전체 모니터를 대표하는 회장을 둘 수 있다.

제8조 (활동) 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에서 요청하는 정책추진사항이나 정책현장의 확인조사, 설문조사
2.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6.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
7.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9조 (활동지원) ①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교육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모니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165호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처분전 법률적 검토와 질의·자문 등을 통한 쟁송사건을 최소화하고, 각종 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대한 복합적 대처와 소송건수 증가 등에 따른 고문변호사 정원증원
- 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사안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시 업무공백 및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변호사 선임필요
- 소송수임사건이 최종판결시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임기조정
-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3인으로 증원 【안 제2조】
 - 행정처분의 법률적 사항, 각종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관한 질의 및 자문 등의 증가 및 주민의 법의식 향상 등에 따른 소송 건수 증가에 복합적인 대처 강화
- 검찰·경찰 소환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제1항제4호】
 - 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를 선임(범죄사범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안 제4조】
 -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임 후 사건 종결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됨으로 소송수행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을 진행 하고자 함.

○ 변호사 보수규정 대법원 보수기준에 맞게 상향조정 【안 제6조】

-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최저기준)이하의 착수금이 33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98. 5월 조례개정 이후 현실과 맞지 않은 수임료로 인하여 고문변호사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특히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예산입에관한규칙」의 보수기준과 비교시 50%로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경제규모의 확대 및 소가 평균액의 증가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소송물가액을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3.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244) FAX:560-4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 560-40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 약 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행정처분전 법률적 검토와 질의·자문 등을 통한 쟁송사건을 최소화 하고, 각종 계약서와 협약서 등에 대한 복합적 대처와 소송건수 증가 등에 따른 고문변호사 정원증원 ○ 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사안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시 업무공백 및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 이 될 경우 변호사 선임필요 ○ 소송수임사건이 최종판결시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임기조정 ○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주 요 내 용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3인으로 증원 【안 제2조】 ○ 검찰·경찰 소환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제1항 제4호】 ○ 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안 제4조】 ○ 변호사 보수규정 대법원 보수기준에 맞게 상향조정 【안 제6조】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해 당 없 음”
관 계 법 령 발 체	“해 당 없 음”
관 련 사 업 계 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기 타 참 고 사 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 중 □□2인□□을 □□3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를 동조 동항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 업무추진 관련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 시 조력 및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 사범 제외)

제4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임한 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사건 및 제3조 제1항 제4호의 선임□□으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선임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800,000	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 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 금의 2분의 1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	
	5억원이상	4,500,000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고문번호사 수 당		200,000원 이내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봄.
2.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u>2인</u>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u>3인</u> ----- -----
제3조(직무) ① (생략) 1. ~ 3. (생략) 〈 신 설 〉 <u>4.</u>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구 업무추진 관련 담당공무원의 검찰 소환시 조력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범죄사범 제외) <u>5.</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u>2년</u> ----- -----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u>수임한 소송사건</u> 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지급기준(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 ④ 생략	제6조(소송비용 등) ----- <u>수임한 소송사건 및 제3조 제1항 제4호의 선임</u> ----- -----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① ② [별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제6조관련)				[별표]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제6조관련)					
구분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구분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내용	착수금			내 용	착수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신청사건	본안사건의 1/20이내	없음	신청 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	330,000	1. 전부승소 시착수금의 150%	민사· 행정 소송 및 선임	2천만원미만및 무소가사건	800,000	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1,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소가-1,000 만원) ×4%+660,000}×1/2	2.50%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0,000
					{(소가-5,000 만원) ×3%+2,260,000}×1/2	3. 화해, 인락, 소취하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1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0,000
{(소가-1억 원)×2% +3,760,000} ×1/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기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	2.50%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				
고문 변호 사 수 당			5억원 이상		4,500,000	3. 화해, 인락, 소취하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1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0이내					
기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여비	실액 실액 실액 실액		기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비용	실액 실액 실액 실액 실액			
고문 변호 사 수 당		200,000원 이내		고문 변호 사 수 당		200,000원 이내			
*1.소가 3억원 이상은 3억원으로 봄 2.환송심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함 3.상고허가신청사건은 본안사건으로 봄				1.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봄 2.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